#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31

발의연월일: 2024. 8. 27.

발 의 자: 박정하・박성민・주진우

진종오 • 한지아 • 김용태

김위상 · 정연욱 · 최은석

이인선 · 김승수 · 박대출

김재섭 · 장동혁 의원

(14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(이하 "문화영향평가"라고 함)하도록 하 고 있음.

그런데 문화영향평가가 각종 계획 및 정책 수립에 있어 문화적 수 요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개별사업의 예산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환류를 의무화하고, 문화영향평가 수행기 관 및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실효 성 확보 및 전문화·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2부터 제9조 의4까지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#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 중 "이하 이 조에서"를 "이하"로 한다.

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등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대상 계획·정책 에 대한 평가결과를 포함한 문화영향평가서와 이를 해당 대상 계획 ·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 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계획·정책의 보완·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·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의 결과를 다음 연도 6월 30 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 제9조의3(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문화영향 평가 수행기관(이하 "평가 수행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 - 1. 국·공립 연구기관
  - 2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
  - 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
  - 4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분야의 정책 연구와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
  -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는 평가 수행기관에 문화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  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 - 2.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
  - 3.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 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수행기관의 지정기준·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의4(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

위하여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(이하 "평가 전담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
- 1. 문화영향평가 지표 개발 등의 조사 · 연구
- 2. 문화영향평가 관련 교육・훈련
- 3.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통합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
- 4. 평가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
- 5. 그 밖에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기 준·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) ① ~ ③ (생 략) 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(이하 이 조에서 "문화영향평가"라 한다)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 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. ⑤ (생략) ⑤ (현행과 같음) 제9조의2(문화영향평가 결과의 <신 설> 활용 등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대상 계획 ·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를 포함한 문화영향평가서 와 이를 해당 대상 계획ㆍ정책 에 반영한 결과를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검 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

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한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검 토하여 계획·정책의 보완·조 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보완·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 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 영향평가의 결과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.

제9조의3(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(이하 "평가 수행기관"이라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<신 설>

- 1. 국·공립 연구기관
- 2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한 연구기관
- 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 른 대학
- 4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분야의 정책 연구와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
-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 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는 평가 수행기관에 문화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 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 달하는 경우
- 3.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아니한 경우

<신 \_설>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
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수행기
관의 지정기준·절차 및 운영
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
으로 정한다.

제9조의4(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(이하 "평가 전담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
- 1. 문화영향평가 지표 개발 등 의 조사·연구
- 2. 문화영향평가 관련 교육·훈 련
- 3.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통합평 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
- 4. 평가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
- 5. 그 밖에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사업
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

<u>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</u> <u>수 있다.</u>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전담기관의 지 정기준·절차 및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